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393호(號)　1928(昭和 3)년 4월 24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61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1928(昭和 3)년 6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4월24일　　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육해군(陸海軍) 휼병품(恤兵品)[1]의 항(項)을 삭제(削除)함.

---

1) 역자: 恤兵은 물품 또는 금품을 보내어 전쟁에 나간 병사를 위로하는 행위를 말하고, 그 병사를 위로하기 위하여 쓰이는 물품이나 금품을 恤兵品이라고 한다. 오늘날은 위문품이란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지만, 휼병품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.